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산업경제위원회
2002. 12. 13.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11월 20일
-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0일

다. 상정 일자

○ 제207회 정례회

-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2002. 12. 13)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 이유

- 충청북도 1지역1명품육성기금과 농어촌개발기금으로 분리운영중인 2개 기금사업을 농어촌개발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 농업투자 비용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융자한도액 일부를 상향조정하고 융자금의 금리를 인하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1지역1명품육성사업을 농어촌개발기금 지원대상사업에 포함(제5조)
 - 「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의 폐지 및 기금 통합
- 사업비지원 한도액 중 일반운용자금 상향조정(제7조제2항제2호)
 -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를 “2,000만원 이내”로 함
- 융자금의 금리를 “연 3%”에서 “연 2%”로 인하 함 (제8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 응 회)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과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을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으로 통합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농업투자비용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융자한도액과 융자금의 금리를 조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제4호에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제7조 제2항 제2호 중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를 2,000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8조 제2항 중 “연3%”를 “연2%”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입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만하게 운영하는 기금을 통합하는 조례로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농가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 원안 의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9. 별 첨

◎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지사제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
----------	----

제출연월일 : 2002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충청북도 1지역1명품육성기금과 농어촌개발기금으로 분리운용중인 2개 기금사업을 농어촌개발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 농업투자 비용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융자한도액 일부를 상향조정하고 융자금의 금리를 인하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1지역1명품육성사업을 농어촌개발기금 지원대상사업에 포함(제5조)
 - 「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의 폐지 및 기금통합
- 사업비지원 한도액중 일반융자금 상향조정(제7조제2항제2호)
 -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를 “2,000만원 이내”로 함
- 융자금의 금리를 “연 3%”에서 “연 2%”로 인하 함(제8조제2항)

의안전문 : 따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지역1명품 육성사업

제7조제2항제2호중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를 “2,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연3%”를 “연2%”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①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며, 모든 채권과 예금은 농어촌개발기금으로 귀속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 용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기용자된 지원금은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대상사업) 개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3. (생략)</p> <p><u><신설></u></p> <p>제7조(사업비 지원) ① (생략)</p> <p>②용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운용자금은 농어민, 작목반 등 농어민조직은 <u>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u>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3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p> <p>제8조(용자금의 상환 및 이율)① (생략)</p> <p>②용자금의 이자는 <u>연3%</u>로 하되,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p>	<p>제5조(대상사업)</p> <p>.....</p> <p>1.~3. (현행과 같음)</p> <p>4. <u>1지역1명품 육성사업</u></p> <p>제7조(사업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1. (현행과 같음)</p> <p>2</p> <p>..... <u>2,000만원 이내</u></p> <p>.....</p> <p>제8조(용자금의 상환 및 이율)①(현행과 같음)</p> <p>②</p> <p>..... <u>연2%</u></p> <p>.....</p> <p>.....</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第133條(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保有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財産의 保有,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③ (생략)

□ 지방재정법

第110條(基金의 運用등) ①地方自治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특별한 目的을 위하여 적당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